

심사보고서

충청북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심사보고서

| | |
|----------|-----|
| 의안 번호 | 325 |
|----------|-----|

2023. 6. 23.(금)
교육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자: 유상용 의원 등 7인

나. 발의일자: 2023년 5월 31일

다. 회부일자: 2023년 6월 1일

라. 상정일자: 2023년 6월 9일

(제409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)

마. 주요내용

○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: 유상용 의원)

가. 제안이유

○ 본 개정 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계획 수립의 주체를 현행 조례에서 규정한 '교육감'에서 「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」에 규정된 관리감독기관 주체인 '교육장'으로 변경하여, 교육지원청 관할 시설 현황에 맞는 원활한 계획의

수립과 시행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,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고자 하는 취지임.

나. 주요내용

- 안전한 어린이놀이시설 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도록 책무의 내용을 변경함. (안 제3조)
-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리계획의 수립 주체를 ‘교육감’ 에서 ‘교육장’ 으로 변경함. (안 제4조제1항)
- 어린이놀이시설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·운영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규정함. (안 제4조제2항제8호 신설)
- 교육감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을 지정하여 고시하고 각 지원할 수 있는 사업 내용을 명시하였으며,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사고의 효율적 예방·관리를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의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. (안 제7조 신설)

3. 검토보고 요지

(수석전문위원 박영균)

가. 조례 개정이유

- 코로나-19로 인해 야외활동이 감소하면서 지난 몇 년 동안 감소추세를 보였던 어린이 안전사고가 일상 회복 과정에서

다시 증가¹⁵⁾하면서 안전한 어린이놀이시설 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 관리의 중요성도 더욱 강조되고 있음.

- 특히 교육청의 관리감독 대상인 유치원과 초등학교, 학원에 설치된 놀이시설의 경우 수업 중간의 쉬는 시간 등 짧은 시간에 다수의 어린이가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 우려도 큰 만큼 안전관리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실행이 중요할 것임.

【참고자료 1】

충청북도교육청 관리 대상 어린이놀이시설 (2023. 5. 4.기준) (단위: 개소)

| 구분 | 유치원(공·사립·병설) | 학교(초, 특수) | 학원* | 계 | 비고 |
|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|-----|----|
| 개소 | 310 | 286 | 2 | 598 | |

※ 자료제공 : 충청북도교육청 체육건강안전과

* 학원 : 청주영재학원, 알티오라이어학원 (청주시 소재)

- 이에 따라, 충청북도교육청에서도 지난 2017년 현행 조례를 제정 하여, 교육감이 관할 지역 교육기관의 어린이놀이시설 설치와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·시행하고 있음.

15) 작년 어린이 안전사고 36.4% ↑ ...“야외활동 늘어난 영향” (2023.5.30. 뉴시스 보도)
 “...30일 소비자원에 따르면, 지난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(CISS)에 접수된 어린이 안전사고는 2만1642건으로 전년 대비 36.4% 늘었다.
 어린이 안전사고는 2018년 2만4097건, 2019년 2만4971건, 2020년 1만8494건, 2021년 1만5871건 등으로 감소 추세였는데 지난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.
 특히 야외활동이 늘면서 교육시설, 놀이터 등 집 밖 공간에서 어린이 안전사고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
 라고 소비자원은 분석했다...”

- 본 개정 조례안은 이러한 현행 조례의 내용 가운데 어린이놀이 시설 안전관리 계획 수립의 주체를 ‘교육감’에서 ‘교육장’으로 변경하여 교육지원청 관할 시설 현황에 맞는 원활한 계획의 수립과 시행이 가능하도록 하고,
- 어린이놀이시설 관리계획에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시스템 구축·운영 내용을 신설해 어린이놀이시설 사용자에게 보다 정확하고 편리한 놀이시설 관리현황 정보를 제공해 안전관리 강화 및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하는 취지임.

나.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

- 안 제3조(교육감의 책무)에서는 현행 조례에서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와 유지관리 시책을 수립·시행하도록 했던 내용을 안전한 어린이놀이시설 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도록 변경하였음.
- 안 제4조(관리계획 수립) 제1항에서는 「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」에서 정한 학교와 유치원 및 학원의 어린이놀이시설 “관리감독기관의 장”으로 정의하고 있는 ‘교육장’을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리계획의 수립 주체로 변경하는 내용을 신설하여, 교육지원청 관할 시설 현황에 맞는 원활한 계획의 수립과 시행이 가능하도록 하였음.

【참고자료 2】

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

(약칭 : 어린이놀이시설법)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3. “관리감독기관의 장”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·감독하는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.

가. 교육장: 어린이놀이시설이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와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에 소재하는 경우

○ 또한, 안 제4조(관리계획 수립) 제2항에는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어린이놀이 시설 안전관리 시스템¹⁶⁾ 구축·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해, 놀이시설 사용자에게 시설 이용과 관리에 관한 정보를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신기술을 활용한 관리시스템 적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규정을 포함하였음.

【참고자료 3】

어린이놀이시설 관련 시도 교육청 조례 현황 (2023. 5. 3. 기준)

| 시·도 교육청 | 시설 수 | 조례명 | 시행일자 | 특이사항 | 비고 |
|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
| 서울 | 1,224 | 서울특별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 | 2016. 3.24. | - 신기술 사용 - 교육장 관리계획 수립 | QR 사용 |
| 부산 | 640 | 부산광역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| 2016. 7. 8. 2017. 7.19. | - 관리계획 수립 없음 | |
| 대구 | 498 | 대구광역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 | 2016. 3.10. | - 교육장 관리계획 수립 | |

16) 어린이놀이시설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 : 놀이시설에 QR코드 등의 신기술을 사용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사용자에게 고지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어린이놀이시설 안내판에 QR코드를 제작 설치하여 실시간 전산망과 연동하여 관내 놀이기구에 대한 안전도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통신기반 시스템

| | | | | | |
|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인천 | 649 | 인천광역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| 2019. 9.23. | - 교육감 관리계획 수립 | |
| 광주 | 413 | 광주광역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| 2015.10. 1. | - 교육장 관리계획 수립 | |
| 대전 | 376 | 대전광역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 | 2016. 2.19. 2017.12.29. | - 교육장 관리계획 수립 | |
| 울산 | 310 | 울산광역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| 2017. 4.27. | - 교육장 관리계획 수립 | |
| 세종 | 137 |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| 2020.10.01. | - 교육감 관리계획 수립 (교육장 없음) | |
| 경기 | 3,337 | 경기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| 2012.10. 5. 2016. 7.19. 2020. 7.15. | - 교육감 관리계획 수립 - 안전관리 사업의 지원 항목 있음 | QR 사용 |
| 강원 | 799 | 강원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| 2016. 2.19. | - 교육장 관리계획 수립 | |
| 충북 | 598 | 충청북도교육청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| 2017. 3.17. | - 교육감 관리계획 수립 | |
| 충남 | 949 | 충청남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| 2016. 6. 8. | - 교육장 관리계획 수립 | QR 사용 |
| 전북 | 1,011 | 전라북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| 2016. 1. 1. 2019.12. 6. | - 교육장 관리계획 수립 | |
| 전남 | 935 | - | - | - | 3곳 QR 사용 |
| 경북 | 1,012 | 경상북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| 2019. 9. 23. | - 교육장 관리계획 수립 - 안전관리 사업의 지원 항목 있음 | QR 사용 |
| 경남 | 1,041 | 경상남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| 2016. 1.28. | - 교육장 관리계획 수립 | |
| 제주 | 240 | 제주특별자치도 유치원 및 학교 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| 2012. 8. 8. 2017. 1. 9. 2021. 9.27. | - 교육감 관리계획 수립 | |

○ 이 밖에도 교육감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을 지정하여 고시하고 지원할 수 있는 사업 내용을 명시하였으며,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사고의 효율적 예방·관리를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의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안 제7조를 신설하여 안전관리시스템의 효율적 운영 및 안전사고 예방·피해 보전 등과 관련된 지원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였음.

다. 종합의견

- 본 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 관리계획 수립 주체의 변경을 통한 안전관리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효율적인 안전관리시스템 활용 등을 명시해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,
- 주요 내용과 조문 구성 체계가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고 「법령 입안 및 심사기준」과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 및 집행 부서 협의와 조례안 예고 등의 입법절차를 준수하여 전체적으로 타당한 조례 개정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“생략”

5. 토론요지: “생략”

6. 심사결과: “원안가결”

7. 소수의견요지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:

- 충청북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중 “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와 체계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며, 안전한” 을 “안전한” 으로, “노력하여야 한다” 를 “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” 로 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교육감은 충청북도교육청 관할 지역 교육기관의 어린이놀이시설” 을 “교육지원청의 교육장(이하 “교육장” 이라 한다)은 관할 지역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의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8호를 제9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.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구축·운영에 관한 사항

제5조제2항 중 “하며, 교육지원청” 을 “하며,” 로 한다.

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제8조 및 제9조로 하고,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조(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사업의 지원) ① 교육감은 법 제18조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을 지정하여 고시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.

1. 어린이놀이시설 사용자의 위해·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
2.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관련 업무담당자 등의 교육
3. 설치검사·안전점검을 받은 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보전을 위한 사업

4.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련된 통계조사 등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교육감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사고를 효율적으로 예방·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의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|---|
| <p>제3조(교육감의 책무) 충청북도 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” 이라 한다)은 <u>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와 체계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며, 안전한 어린이놀이시설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</u></p> | <p>제3조(교육감의 책무) ----- ----- <u>안전한</u> ----- ----- ----- ----- <u>필요한 조치를 취</u> <u>하여야 한다.</u></p> |
| <p>제4조(관리계획 수립) ① <u>교육감은 충청북도교육청 관할 지역 교육기관의 어린이놀이시설 설치와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계획(이하 “관리계획” 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</p> <p>1. ~ 7. (생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8. (생략)</p> | <p>제4조(관리계획 수립) ① <u>교육지원청의 교육장(이하 “교육장” 이라 한다)은 관할 지역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의</u>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----- -----.</p> <p>1. ~ 7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8.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구축·운영에 관한 사항</u></p> <p>9. (현행 제8호와 같음)</p> |
| <p>제5조(안전 및 위생 점검) ① (생략)</p> | <p>제5조(안전 및 위생 점검) ① (현행과 같음)</p> |

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, 교육지원청 교육장은 관리주체가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·감독하여야 한다.

<신 설>

② -----

-----.

제7조(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

사업의 지원) ① 교육감은 법 제18조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을 지정하여 고시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.

1. 어린이놀이시설 사용자의 위해·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
2.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관련 업무담당자 등의 교육
3. 설치검사·안전점검을 받은 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보전을 위한 사업
4.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련된 통계조사 등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교육감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사고를 효율적으로 예방·

제7조 · 제8조 (생략)

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의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.
제8조 · 제9조 (현행 제7조 및 제8조와 같음)

관 계 법 령

□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(약칭: 어린이놀이시설법)

[시행 2021. 6. 23.] [법률 제17695호, 2020. 12. 22., 일부개정]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3. “관리감독기관의 장”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·감독하는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.

가. 교육장: 어린이놀이시설이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와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에 소재하는 경우

나.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): 가목 외의 어린이놀이시설의 경우

제2조의2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,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안전 환경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.

제17조의2(어린이놀이시설의 지도·감독 등) ①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매년 어린이놀이시설 지도·점검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지도·점검 결과 시설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관리주체에게 어린이놀이시설의 규모

및 종류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간 내에 그 시설개선을 명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기간 내에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- ③ 제2항에 따라 시설개선의 명령을 받은 관리주체는 수리·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④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시설개선의 명령이 이행되었는지를 확인·점검 하여야 한다.
- ⑤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이행 점검 결과 시설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리주체에게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을 보완하도록 명하여야 한다.
- ⑥ 제1항에 따른 지도·점검계획의 내용, 지도·점검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8조(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사업의 지원) ①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 및 교육감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기관(이하 “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”이라 한다)을 지정하여 고시하고 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

<개정 2008. 2. 29., 2008. 12. 19., 2011. 5. 30., 2020. 12. 22.>

- 1.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자의 위해·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
 - 2.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관련 업무담당자 등의 교육
 - 3. 설치검사·안전점검을 받은 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보전을 위한 사업
 - 4.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련된 통계조사 등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·도지사 및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- ②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의 지정기준·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.

충청북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비용추계서

1. 사업개요

- 어린이놀이시설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

2. 비용 발생 요인

- 어린이놀이시설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도입에 따른 구축 비용, 어린이 놀이시설 전수 점검 및 QR코드 제작 설치비
- 어린이놀이시설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운영 비용

3. 관련 조문

- 조례안 제4조제2항의제8호
〈신설〉 8.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구축·운영에 관한 사항

4. 비용 추계결과

- 추계의 전제

가. 대상: 「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」에서 정한 어린이 놀이시설 중 충청북도 내 각 교육지원청에서 관리하는 놀이시설

나. 전제

- 1) 시스템 구축·운영 비용은 시스템 설치비, 전수조사 및 QR코드 설치비, 연간시스템 유지관리 비용, 현장방문 지도·점검비로 구분해서 산출함

※ 시스템설치비 및 QR코드 설치비는 최초 설치시에만 발생

- 2) 비용은 2024년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
- 3) 구축기간은 2024년 1년으로 가정
- 4) 지출은 시스템구축 이후 유지비용으로 계속 발생

다. 비용추계의 결과

1) 시스템 구축비: 242,000천원

- 본청(1) : 22,000천원 × 1개 = 22,000천원
- 지원청(10) : 22,000천원 × 10개 = 220,000천원

2) 학교, 유치원, 학원 어린이 놀이시설 전수점검 및 QR코드 제작, 부착

- 77천원 × 598개소 = 46,046천원

3) 시스템 연간 사용료: 132,000원

- 본청(1) : 12,000천원 × 1개 = 12,000천원
- 지원청(10) : 12,000천원 × 10개 = 120,000천원

4) 현장 방문 지도·점검(1년에 2회)

- 88천원 × 598개소 × 2회 = 105,248천원

5. 연도별 비용 추계표

(단위: 천원)

| 구분 | | 연도 | 1차년도 (2024년) | 2차년도 (2025년) | 3차년도 (2026년) | 합계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|
| | | - | - | - | - | - |
| 세입 | | - | - | - | - | - |
| | 소계(a) | | - | - | - | - |
| 세출 | 시스템 구축· 운영 | 설치비 | 242,000 | | | 242,000 |
| | | QR코드설치비 | 46,046 | | | 46,046 |
| | | 시스템유지관리비 | 132,000 | 132,000 | 132,000 | 396,000 |
| | | 현장방문 지도점검 | 105,248 | 105,248 | 105,248 | 315,744 |
| | | 소계 | | | | |
| | 소계(b) | | 525,294 | 237,248 | 237,248 | 999,790 |
| □ 총 비용(b-a) | | | 525,294 | 237,248 | 237,248 | 999,790 |